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0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의 정률제 전환	3

I.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0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재산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소득은 줄었으나 거주 목적의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이나 실소득이 부족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제2호, 제72조, 제72조의3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의 정률제 전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와 관련하여 기존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및 점수당 금액에 따라 산정하는 등급제에서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액과 재산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하는 정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 제72조, 제72조의3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 소득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
5의2.·6. (생략)	5의2.·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9조(보험료) ① ~ ④ (생략)	제69조(보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⑤ ----- ----- -----.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1. ----- ----- --- 소득보험료율-----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생략)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 ----- 재산보험료율-----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① -----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은-----
--.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
---.

1. 2. (현행과 같음)

②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

③ -----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3조(보험료율 등) ①·② (생략)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생략)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④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보험료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
-----.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 -----.

③ -----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 -----
-----.

1. 2. (생략)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u>재산보험료부과점수</u>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 ----- - <u>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u>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제71조(소득월액)**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① 세대별 소득월액(연간 소득 x 1/12 x 소득평가율²⁾)에 보험료율(7.19%)을 곱한 금액과 ② 세대별로 산정된 재산금액³⁾에 대한 등급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됨.

- 참고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정률제를 도입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등급제를 사용해왔으며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보험료의 경우 계속해서 등급제를 사용하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한다.

2)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근로·연금 소득(50%)

3)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1억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담보전환대출 금액이나 보증금담보전환대출 금액이 종전의 대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보증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퍼센트로 한다.

4)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소득과악이 용이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과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부과방식을 달리 규정하였던 것으로 설명함.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관련 등급기준”에 따르면 등급별 기준 재산금액 증가율 대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증가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바, 재산금액이 증가하여 등급이 높아질수록 재산 1만원 당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⁵⁾

< 등급제에 따른 역진성 문제 발생 예시 >

◆ 재산등급별 재산 1만원 당 보험료 금액 예시

- * (재산 1등급: 재산과표 450만원 이하) 재산과표 225만 원인 경우, 보험료 4,650원($22\text{점}(\text{재산부과점수}) \times 211.5\text{원}$)
=> 1만원 당 보험료는 20.67원($4,650/225 = \text{약 } 20.67\text{원}$)
- * (재산30등급: 재산과표 3억 4,900만원~3억 8,800만원) 재산과표 3억 6,850만원인 경우, 보험료 15만 4,600원($731\text{점} \times 211.5\text{원}$)
=> 1만원 당 보험료는 4.20원($154,600/36,850 = \text{약 } 4.20\text{원}$)
- * (재산60등급: 재산과표 77억 8,124만원 초과) 재산과표 77억 8,125만원인 경우, 보험료 49만 5,120원($2,341\text{점} \times 211.5\text{원}$)
=> 1만원 당 보험료는 0.64원($495,120/778,125 = \text{약 } 0.64\text{원}$)

□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5)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문제 관련, 재산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보험료율을 더 낮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할 경우 재산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다해질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산보험료가 없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음.

나영균·문용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역진성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제31권3호, 한국보건행정학회, 2021.

가 심화될 수 있고, 근로·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 없이 부동산 등의 재산만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정률제 시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정률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그 부과기준과 보험료율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현행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험료 수입이 지나치게 적게 거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720호, 2024.12.19.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보험료 정률부과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사전에 실시한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사단법인 건강안전복지연합, 2025.6.~12.)’를 실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보고서는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인 재산등급별 점수제는 고재산가보다 저재산가에게 보유재산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하므로, 재산보험료 부과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방식을 현행 소득보험료 부과방식과 동일하게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함.

□ 농림축산식품부

-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해결을 위한 정률제 적용에 이견 없음. 다만, 농가소득은 농지 면적에 비례하여 인상하지 않아 농지를 건축물, 주택 등과 동일하게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는 현행 재산금액 산정 기준 유지 시 농업인의 실소득 대비 재산보험료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음. 농지는 농업인의 생계기반으로 일반 주택·건축물과 달리 임대수익 등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농지의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산정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 재산등급별 점수제는 고재산가보다 저재산가에게 보유재산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하므로, 재산에 비례한 정률 부과액의 역진 현상을 해소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 부과 및 소득중심 부과체계 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소규모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중산층과 은퇴한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본격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가 필요함.
- 아울러, 복잡한 보험료 산정방식에서 재산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함에 따라 제도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구조적 개편 관점에서 재산보험료 정률화는 필수적이고, 저재산·저소득 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며 소득정률제와 같이 형평성 있는 부과기준 확립으로 부담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503